

2013년 제15호  
2013년 11월 20일(수)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원지원센터

# 한농연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전화 : (070)7165-0017  
전송 : (02)3401-6549  
http://kaff.or.kr  
kaff0001@gmail.com

## 제4회 농(축)협조합관리사 민간자격시험 12월 13일(금) 전국 고사장서 일제 실시

- 12월 13일(금) 오후 2시~4시, 전국 8개 고사장서 실시...한농연 회원은 물론 일반 농업인(농민조합원)은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민간 자격시험인 제4회 농(축)협조합관리사 시험을 오는 12월 13일(금)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8개 고사장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4회 농(축)협조합관리사 시험은 한농연 회장 명의의 민간 자격시험으로써, 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원리에 입각하여 일선 농축협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앞당기기 위한 농민조합원 및 이사, 감사, 대의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 본 연합회 및 한국농업경영인이 주관한 2012년 및 2013년도 농축협임원경영능력배양교육 중급과정을 이수했거나 관련 교재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협동조합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지식과 역량을 쌓은 농민조합원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 특히 2015년 3월 11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동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농(축)협 조합장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농(축)협조합관리사 민간자격을 반드시 획득하시어 타 후보자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제4회 농(축)협조합관리사 민간자격시험 안내
  - 일시 : 2013. 12. 13(금) 14:00~16:00
  - 장소 : 한농연 각 시도연합회별로 설치된 8개 고사장(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응시자격 : 일선 농축협의 조합원
  - 접수기간 : 2013년 11월 4일~12월 11일 18시까지(마감일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인정)
  - 접수처 : (우 138-80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 회관 2층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3회 농(축)협조합관리사 시험 담당자 앞
  - \* 응시원서와 안내문은 한농연 홈페이지([www.kaff.or.kr](http://www.kaff.or.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농연 한민수 실장(070-7165-0017, 010-2230-9435, [minsuaerd@gmail.com](mailto:minsuaerd@gmail.com))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기초 지자체들의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및 가격안정기금 설치 조례 현황

-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조례 현황 (2013년 10월 현재)
  - 충남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및 전남 무안군, 경남

창녕군에서 제정·시행중에 있음

지역	제정일	조례명
충남 서산시	2008.2.11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충남 당진시	2013.5.15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충남 예산군	2010.1.22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홍성군	2013.7.25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 무안군	2011.5.16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 창녕군	2008.7.7	창녕군 농작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이들 조례는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시행중인 7개 품목(배추, 무, 대파, 당근, 고추, 마늘, 양파) 중에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지급(지원)을 시행하며, 이 외에도 감자·고구마 등의 구근류를 포함하는 지역도 있음
- 농가는 시군(읍면동)에 사전 지원신청을 하고 실제 가격폭락이 일어날 경우 폐기후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파종 전 사전 지원신청 및 계약재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가격폭락이 없는 경우, 계약 농가라도 별도의 판로를 통해 임의처분할 수 있음

## ○ 가격안정기금 조례 제정 현황 (2013년 10월 현재)

- 충북 음성군 및 진천군, 전남 나주시, 무안군, 함평군, 고흥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정·시행중에 있음

지역	제정일	조례명
충북 음성군	2011.1.13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충북 진천군	2013.10.10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전남 나주시	2010.1.20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남 무안군	2010.3.29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남 함평군	2010.12.9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남 고흥군	2010.12.27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2013.5.15	제주특별자치도 발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역 내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수매·저장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임
- 지자체·지방의회·농협·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기금 운용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임